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88

발의연월일: 2021. 6. 4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권명호

김성원 · 김영식 · 박성민

엄태영 · 이종성 · 정운천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(課稅)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 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,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.

행정안전부장관,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·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8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0조제2항 중 "도지사"를 "특별자치시장, 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80조(자료의 제공) ① (생 략) | 제80조(자료의 제공) ① (현행과 |
| | 같음) |
| ② 행정안전부장관, 특별시장, | ② |
| 광역시장, <u>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 | 특별자치시장, 도지 |
| 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| <u>사</u> |
| 토지·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| |
|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| |
|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| |
| 통보하여야 한다. | |